

제76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1월 16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1월 16일 하오 12시 3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석 16명중 출석의원 12명

결석 김경인, 임석희, 박두순, 김일섭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제73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제73회 제2차 회의록 통과

3. 제74회 회의록 통과

4. 제75회 회의록 통과

5. 진정서 제출 상황보고(자동차 적재선 신조경비 보조관계)

나. 부의안건

1. 단기 4290년도 제5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단기 4290년도 제6회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안

3. 시유건물 매각철거의 건

4. 신설국민학교 부지 취득의 건

8. 토의사항

※ 제73회 제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제73회 제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74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75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진정서 제출 상황보고

서기 박찬대로부터 결과보고가 있었음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제5회)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출경정 예산안(제6회)

서기 박찬대 제안이유 설명

◇김 상 대 의원

- 본 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특경정 예산안을 일견컨대 세입은 각각 보조에 의한 것으로서 경이 한 것이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여 세출에 있어서만 의심나는 항목만 질의토록 하여 본회의석상에서 직접접심의 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재석 12명중 만장일치 가결

◇강 영 락 의원

- 보건비에 공동변소 2개를 설치비로 50만 환을 계상한 바 있으나 현금 해안통의 기존시설이 그 관리불충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철거 요청이 자자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공동변소에 관리인을 상치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에 조감하여 금후 재고함을 촉구하는 바이며 신설후보지 책정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선거구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공동변소의 관리철저를 촉구하는 것은 동감하는 바이나 그 불결함을 빙자하여 자기 선거구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지적하고 싶다.

본 건에 있어서는 초대 의회시에도 논란된 바 있었지마는 사회과에 전속청소부를 배치토록 신년도 예산면에 반영시키여 그 관리면에 치중토록 하여 그 증설을 극력 요청하는 바이다.

◇명 남 철 의원

- 본 청 특별관공비에 50만 환이 계상된 바 있으나 이는 총무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인지 타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천명하여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정호(井戶)신설비 계상에 있어서 전반 4개소 신설시에도 도 당국의 선정된 기술자가 시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목마른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역원조까지 받아가며 준공하였다한다. 도에서는 상당액의 예산이 계상되어 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심히 모순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금반의 11개소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지 또 그 보조가 전액보조인가 일부보조인가 한계를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공동변소 신설에 있어서 죽교동 시장에 있는 공동변소는 지하수가 나서 그 청소에 1회 2, 3.000환씩의 경비를 지불하는 현상인 것이다. 차후 이와 같은 공사는 차라리 안 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김 상 대 의원

- 도선장비 126만환의 계상은 좋으나, 수선공사를 할적에는 완전무결한 공사를 하여야 될 것이다. 저반 용당측 잔교는 수리 후 1개월이 못 되어 파괴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돈을 수중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일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금반의 추경예산을 결산을 하기 위한 추경이 아닐 것인데 금년도도 이미 저물어 지는 차제, 국도, 하수도 공사 등 제반사업비 계상은 과연 금년도내에 준공의 예상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더라도 연중 착공의 용의라도 있는 것인가 또는 부득이한 조치인가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도선장비의 유류대 30만환 계상은 정부 수배가격인가 여부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 명남철 의원 질문의 특별관공비 계상은 총무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모양이나 본 청의 특별관공비는 시장의 기밀비라 할까 시장으로서 접대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지출되는 것으로서 각과에 사무 지도차 내시하는 상급관청내객의 접대비를 관공비에서 지출하게 된다면 불과 수개

월에 없어질 것이며 타과는 적의한 과목을 이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의 50만 환 계상은 거반 내무부 주최 행정연구회 개최시 경비 20만 환과 이미 채무확정된 부분 및 이후 1개월간의 비도를 예상한 것이다.

정응표 의원 질문의 사업비 조월여부의 문제는 보조금을 반납 않으려면 연도 내 착공하여 준공의 형식을 취하여야 되는 것임으로 현금 설계는 되어가지고 있으니,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은 년도내에 경쟁입찰에 부할 계획입니다.

강영낙 의원 질문의 도선장 유류대는 정부지정가격입니다.

김상대 의원 질문의 도선장 수선관계는 적은 예산으로서 시공하여 그리된 것이오니 차후 가일층 유의하여 완전을 기하려합니다.

◇사회과장 박 규 성 답변

- 정응표 의원과 강영락 의원 질문의 공동변소 위치선정 문제는 인구내왕의 밀도가 심한 향동과 보광동의 2개소를 지정한 것이나, 그 관리면에 있어서 현금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청소에 주력하고 있는 관계로 손이 빠져서 불결하다고 보아집니다.

신년도부터는 계획적으로 그 관리면에 주력하겠으니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정호(우물)시설문제는 도비보조 5할과 시비 부담 5할로서 하게 되어있으나 시 자체 부담불능으로 부득이 보조에만 의존하게 된 것으로 몽리구역면의 원조를 불면하게 되는바 현재는 5할 정도 착공하고 있습니다.

조양순 의원 질문의 죽교동 시장변소 문제는 그 실정은 잘 알고 있는 터이나, 예산면의 불허용으로 그리되었으니 신년도부터는 유의하려합니다.

◇명 남 철 의원

- 도선장 유류대 30만환 계상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유류가 그렇게까지 소모 될 리가 만무한 것이며, 그는 기계가 먹는 것이 아닐 것이다.

결국 중간업자의 손을 경유함으로서 이러한 폐단이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조 양 순 의원

- 명남철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 현금까지 관계부하직원을 신임하고 왔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여 불미한 사례가 야기 안되도록 유의하겠으며, 신년도부터는 창고신설도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 성 균 의원

- 현금 당시는 상수도 공사 추진에 총역량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타 사업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세관 근방의 하수구 등 불결하여 그 악취때문에 국가적인 체면유지에도 곤란할 뿐 아니라 강우기의 남교동 일대 홍수사태와 평양집 근방의 하수구 등 신년도 예산책정 시기는 감안하도록 참고로 말한다.

◇명 남 철 의원

- 찬조발언

◇강 영 락 의원

- 일반회계 추경예산과 특수경정 예산 등 세입은 거개보조에 의한 것이고 세출면도 대체적인 질의응답이 완료된 것이며 경이한 안건이오니 양건 공히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재석 12명중 만장일치 가결

※ 시유건물 매각 철거의 건

박찬대 서기 제안 이유 설명

◇김 창 희 의원

- 본 건 부득이한 것이오니 원안무수정 통과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신설 국민학교 부지선정의 건

◇교육위원회 차 영 균 서무과장

- 제안 이유 설명

◇김 성 균 의원

- 신설 국민학교 부지의 정지경비내용의 설명을 요구한다.

◇김 창 희 의원

- 신설학교를 죽교 4구동에 건립한다면 학구는 여하히 변경될 것인가

◇교육위원회측 답변

- 김성균 의원 질문의 부지정지비는 시와 도당국 기술자 측의 감정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질검사는 불가능하나 계산하여 부지 3.000평에 약 3.000만환 가량 소요되겠습니다.

김창희 의원 질문의 학구변동문제는 신설 근본문제인 유달 국민학교를 필두로 중앙, 북교학교 등 자연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 상 대 의원

- 신설국민학교 부지선정 문제는 시민의 지대한 주시리에 쓴 것이다.

저반 추경예산 통과시에도 정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조건부로 되어있는 것이고, 학구문제에 있어서도 유달 국민학교로부터 진정서가 제출 되어있는 등 형편이오니 신중성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요는 학구문제와 정지비 문제인 것이니 그 정지비에 있어서도 적치시대의 상대(商大)부지와 최근의 사범학교 정지비등을 감안하여야 될 것이다.

◇명 남 철 의원

- 골자는 3.000만 환이나 소요되는 정지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며 죽교 4구동에 신축한 반면 음료수의 인수 학교환경의 식목, 등교의 통로 등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신설학교의 궁극의 목적이 유달학교의 교실 완화에 있을 것이다.

◇김 삼 성 의장

- 본 건 중대한 문제이다. 의결부로서는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니 본 건 전문 분과위원회에 회부선언

◇김 성 균 의원

- 시정감사를 실시 도중 1일밖에 못하고 보류하여 두었으니 전반기는 내11월 18일부터 26일까지로 후반기는 내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그 일정을 변경 실시할 것을 동의...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성 균 의원

- 저반 체신부 장관 내목하였을 적에 확약하였든 공전식 전화설치문제는 꼭 약속대로 실천을 보게되어 목하 준공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당 시의회의 결의로 체신부 장관에게 감사장을 증정 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삼 성 의장

- 폐회선언 하오 12시 35분 현재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1월 17일

시의원 조 양 순

시의원 김 창 희

작성자 서기 주 도 식